

『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3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4일

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, 공동 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두되고 있음
- 이에,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,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⇒ 수질오염방지시설(분뇨처리시설) 신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A	수질오염 방지시설	분뇨 처리 시설	산동면 성수리 715번지(환지 936) 일원	-	증)30,283.1	30,283.1		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

○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A	수질오염 방지시설 (분뇨처리 시설)	수질오염방지시설 (분뇨처리시설) 신설 A=30,283.1㎡	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함

○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30,283.10	100.0	
시설용지	소 계	4,525.71	15.0	
	가축분뇨처리시설	4,116.00	13.6	가축분뇨 처리시설, 차량소독시설, 차량 계근대
	관리동	409.71	1.4	관리동
도 로		5,289.00	17.4	
주차장		554.00	1.8	11면 (법적주차대수 해당없음)
공공시설	소 계	3,233.00	10.7	
	체육시설	990.00	3.3	족구장, 배드민턴장
	광장 및 휴게시설	2,243.00	7.4	광장, 휴게시설
녹 지		16,681.39	55.1	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○ 추진경과(2011년 7월 ~ 2013년 3월)

- 2011. 7. 1 사업대상자 확정(2011. 6. 29 심사)
- 2012. 1.31 ~ 7.22 산동면 성수리 주민 등과 대화 45회
축산단체 등 설명회 7회, 대책회의 8회 등
- 2012. 7.14 산동면 성수1리 주민총회 수용 가결
- 2013. 1. 7 주민요구사항 예산반영 결과 및 향후 반영계획 알림
- 2013. 1.11 도시계획시설결정, 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 회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,
-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안으로서,
-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경종농가 화학비료 절감,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, 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아울러, 주민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, 해당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,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, 악취、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, 완벽한 시설건립과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추진 필요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.

『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 의 건 서

□ 사업개요

1.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715번지(환지 936) 일원

2. 시설의 규모 및 용도에 관한 계획

○ 시설의 종류 :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)

○ 시설의 명칭 :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

○ 면 적 : 기정 0 m^2 변경 30,283.1 m^2 (증 30,283.1 m^2)

○ 용 도 지 역 : 농림지역

3. 추진배경

○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, 수질 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건립추진

□ 의견 사항

○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안으로서,

○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, 해당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생활과 환경에 저해요인이 발생되므로,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、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, 완벽한 시설건립과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.